##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20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이학영·박정현·한정애

정준호 • 한민수 • 김영배

진선미・황 희・문금주

김현정 • 전현희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교통여건이 열 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(청년교통비 지원사업)을 수행하고 있음.

이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2021년까지 매월 약 1,010개 산업단지 청년 약 16만명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,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. 실제로, 2022년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80% 지방비에서 20%를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한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음.

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 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1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4.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 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5조의21(사업) ① 공단은 제45	제45조의21(사업) ①		
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			
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			
을 한다.			
1. ~ 5의3. (생 략)	1. ~ 5의3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5의4.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		
	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		
	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		
	<u>원</u>		
6. ~ 12. (생 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